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217 발의연월일: 2021. 11. 10.

발 의 자: 김주영·고용진·김수흥

김정호・노웅래・윤건영

윤재갑 • 이개호 • 이병훈

정일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지, 초지, 산림지 등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5억원을 한도로 영농상속재산을 공제하는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반면, 농림어업 외 제조업·도소매업 등의 일반 업종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적용받아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등 영농상속공제보다 많은 세제혜택을 부여받고 있으며, 축산농가의 경우 가축사육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가축은 영농상속공제 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축산농업인의 후계자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 제도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농업·축산업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 상속공제의 한도를 영농기간별로 차등 상향(15억원 → 30~50억원)하 고 영농상속공제 대상재산에 가축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 항).

법률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농지, 초지, 산림지, 가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피상속인이 2년 이상 5년 미만 계속하여 영농한 경우 : 30억 원
- 나. 피상속인이 5년 이상 10년 미만 계속하여 영농한 경우 : 40억 원
- 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한 경우 : 50억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기초공제) ① (생 략)	제18조(기초공제) ① (현행과 같
	승)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2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	
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	
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	
용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2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u>영농</u>	다음
<u>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u>	<u>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u>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	한도로 하는 농지, 초지, 산림
억원을 한도로 한다)	지, 가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
	<u>당하는 금액</u>
<u><신 설></u>	<u>가. 피상속인이 2년 이상 5년</u>
	미만 계속하여 영농한 경
	<u>우 : 30억원</u>

<u> <신 설></u>	나. 피상속인이 5년 이상 10
	년 미만 계속하여 영농한
	<u> 경우 : 40억원</u>
<u><신 설></u>	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
	<u>속하여 영농한 경우 : 50</u>
	<u>억원</u>
③ ~ ⑪ (생 략)	③ ~ ⑪ (현행과 같음)